

자전거이용현황

구 분		내 용
승인번호		110031
승인일자		2017년 8월 21일
통계종류		보고통계
조사대상	지역	■ 전국
	범위	■ 전국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,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,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황,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등
	보고단위	■ 자전거도로 노선(개), 길이(km), 자전거(대),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가입(건) 등
	보고대상 규모	■ 전국 자전거도로 약15,000여개 노선, 약23,000km, 공영자전거 약 43,000여대 등
보고항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전거 도로·주차장·안전시설·수리센터, 자전거 탑재 가능 열차, 역사 자전거 주차 시설 등 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현황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전거 관련 단체보험·영조물 책임보험, 자전거 등록제 운영, 방치자전거, 공영자전거, 자전거 안전교육시설 등 ■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고유형별, 연령별, 성별, 법규위반별, 도로종류별, 지역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■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 시행구간, 인증센터 설치, 이용 등
자료보고방법 및 작성방법		■ 행정집계
보고기간	기준시점	■ 매년 12월 31일 기준
	보고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3월~9월
	보고주기	■ 1년
공표	공표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9월
	공표주기	■ 1년
	공표방법	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(www.mois.go.kr), 자전거 행복나눔(www.bike.go.kr), 간행물(자전거이용현황)
보고체계		■ 지방자치단체→행정안전부 보고 및 유관기관 행정자료를 제출 받아 작성
자료이용시 유의사항		■ 자전거도로 구분이 개정(2014.1.28.)되어 자전거우선도로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중 일부가 재분류됨
주요 용어해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전거 전용도로: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,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: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·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■ 자전거전용차로: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 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■ 자전거우선도로: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(2014.1.28. 개정)
주요 연혁		■ (2017년) 자전거이용현황 통계 작성 승인(통계청)